

【특집 ·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 규범문법의 통일 방안

고영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어가기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반세기가 넘었다. 그 뒤 남북한은 3년 동안 전쟁을 치렀고 그로부터 20여 년 동안 아무런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남북을 오고간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간헐적인 행사에 지나지 못하였다. 정치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상대방의 사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도 없었고 알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정부의 북방 정책에 힘입어 북한에 관련된 자료가 개방되고 북한을 비롯한 옛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연구가 장려됨에 따라 북한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열리게 되었다.

한국 민족은 삼국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단일 국가를 유지하여 왔다. 더욱이 15세기에는 한국의 언어를 적을 수 있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창제되어 한국어가 문학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아 왔으며, 19세기 말부터는 국어와 국문이 공용성을 획득하여 이를 같고 다듬는 기운이 성숙하여지기 시작하였다. 1933년에 마련된 『한글마춤법통일안』은 한국인의 손으로 마련된 최초의 명문화된 한국어문의 규범집이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어문학자들은 사전을 편찬할 수 있었다.

한국은 2차대전의 종료를 계기로 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곧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다. 외국 세력에 의하여 한반도가 둘로 갈라지고 상극된 이념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면서도 한국인은 『한글마춤법통일안』을 준거로 삼아 잃었던 말과 글을 회복하고 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일치된 노력을 기울였다.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어문 규정을 고치고 새로운 규범집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모두 그 뿌리는 통일안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통일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분화되어 있는 남북 양측과 재외교민의 규범문법의 실상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규범문법의 통일 방안을 구상해 보기로 한다.

2. 한민족어의 규범문법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조선어학회는 1933년에 맞춤법을 제정하고 이어 사전 편찬에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표준 문법의 제정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통일안과 『큰사전』(1947)을 통하여 성음, 문법, 문장부호에 관련된 체계와 용어를 몇 가지 가려 낼 수 있다.

먼저 『한글마춤법통일안』을 보기로 한다.

문장(총론), 단어(총론, 3항), 된소리(3항), 설측음(4항), 구개음화(5항), 바침소리(6항), 접두어(6항), 관형사(6항), 부사(6항), 체언(7항), 토(7, 53, 61항), 용언(8항), 어간(8항), 어미(8항), 규칙용언(3절), 변격용언(4절), 명사(12, 53, 49항), 어원적 원형(17, 47항), 어원적 어간(20항), 어원적 어근(21항), 어근(24, 27, 32항), 품사합성(7절), 복합명사(30, 59항), 원사(8절), 접두사(8절), 당소리(45항), 흘소리(45항), 보조의 뜻을 가진 용언(49항), 품사(부록 1-1), 접속형(부록 1-6), 중지형(부록 1-6), 고유명사(부록 2)

성음에 관한 용어는 “된소리, 바침소리, 닿소리, 홀소리”와 같이 고유어로 된 것이 있고, “설측음, 구개음화”와 같이 한자어 용어를 취한 것도 있다. 문법용어는 굴절법과 조어법 등의 형태론 용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품사를 뜻하는 용어는 주시경 학파의 “씨” 대신 “품사”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통일안에 보이는 품사는 다음과 같다.

체언(명사), 용언, 관형사, 부사

품사의 큰 범주 네 가지를 모두 세웠다.¹⁾ 관형사는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에서 설정되었는데 통일안에서도 수용되어 있다.

단어를 뜻하는 말로 주시경학파의 “낫말, 날말”대신에 한자어 “단어”를 택하였다. 맞춤법통일안이 주시경학파의 손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시경학파의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형태론 관계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어간, 어미, 토, 종지형, 접속형, 원사, 어근, 어원적 원형, 어원적 어간, 어원적 어근, 접두어(사)

“어간”, “어미”, “종지형”, “접속형”은 용언을 대상으로 설정된 굴절법 용어인데 당시 문법 체계에 변혁을 일으켰던 최현배(1930)의 이른바 종합적 설명법을 받아들인 것이다.²⁾ “토”는 통일안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7항과 53항에서는 체언에 붙는 조사를 의미하고 61항에서는 앞의 경우와 같이 조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미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³⁾ 주시경 이래의 “토씨(關係部)”는 조사는 물론, 어미부 전반을 포괄하였는데 통일안은 대체로 최현배의 문법 체계에 따라 조사만 “토”의 범주에 넣었다. 원사, 어근,

1) 필자는 한국어의 품사를 크게 큰범주, 작은범주, 바깥범주의 셋으로 나눈 일이다. (고영근 1993: 88)

2) 최현배의 문법 체계가 통일안에 수용된 경위에 대하여는 고영근(1993/1996: 237-44, 1995b: 212)를 보라.

3) 이 문제에 대하여는 고영근(2001: 109)을 보라.

어원적 어간, 어원적 어근, 접두어(사)는 대체로 조어법에 해당하는 용어로 보인다. “원사, 어근, 어원적 어근, 어원적 어간”은 그 개념이 분명치 못한 점이 없지 않으나 현행 학교문법의 조어법의 핵심 단위인 “어근”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일제강점기에 편찬이 완료되고 해방 후에 간행된 조선어학회의 『큰사전』의 문법 정보를 보기로 한다. 『큰사전』 편찬자는 “6. 문법형태의 표시”라는 항목을 세우되 먼저 다음과 같은 일러두기를 보이였다.

각 어휘의 문법형태 표시에 대하여는 아직 본회로서의 대표적 문전이 제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이 책에 쓸 임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부호들으로써 표시하였음.

위의 설명에 기대면 조선어학회의 표준 문법이 제정되지 못한 탓으로 임시방법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부호를 사용하였다. 부호는 고유어 문법 용어의 첫머리를 딴 것이다.

이, 짚이, 대, 셈, 어, 뚱어, 제, 남, 입, 시, 뚱음, 잡, 언, 엇, 느, 토, 줄기, 뚱줄, 머리, 발, 끝

품사는 다음 10개를 가려낼 수 있다.

명사[이], 대명사[대], 수사[셈], 형용사[어, 뚱어], 동사[제, 남, 입, 시, 뚱음], 지정사[잡], 관형사[언], 부사[엇], 감탄사[느], 조사[토]

괄호 밖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한자 용어를 제시하였다. 괄호 안은 줄인 문법 용어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에서 줄였는가 하는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품사는 최현배의 『우리말본』(1930, 1937)의 10품사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 체계 가운데는 통일안의 큰범주 4개가 들어 있음은 물론이다. “절이”는 의존명사, “똥어”는 보조형용사, “제”는 자동사, “남”은 타동사, “입”은 피동사, “시”는 사동사, “줄기”는 어간, “똥줄”은 보조어간, “머리”는 접두사, “발”은 접미사, “끝”은 어미를 가리키는데 세부 체계에 있어서도 최현배의 체계와 일치한다. 용어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을 따름이다. 이를테면 사동사를 최현배의 “하임”을 취하지 않고 “시킴”의 “시”를 딴 것이 그러하다.

조선어학회의 양대 사업인 『한글마춤법통일안』(1933)과 『큰사전』(1947)을 비교해 보면 용어에 있어서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섞여 있기는 하여도 대체로 최현배의 문법 체계를 바닥에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토는 원칙적으로 체언에 붙는 조사를 가리키지마는 어미도 포괄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해방으로부터 1948년까지는 대체로 일제강점기에 출판되었던 문법서를 다시 짚어 내어 국어교육을 뒷받침하는 일이 많았다. 품사를 비롯한 문법 체계도 각인 각색이었고 용어도 고유어와 한자어가 병존하여 통일된 문법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의 출범을 계기로 삼아 검인정 제도가 도입되자 1949년에 드디어 규범문법이 통일되었다. 품사 체계를 비롯한 문법 체계에 대한 통일은 생각지도 못하고 용어의 통일만 손을 대었다. 그것도 택일적이 아니라 고유어 용어와 한자어 용어를 다 같이 인정하되 어느 하나만 일관성 있게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당시에 용어를 고유어로 삼자는 급진파의 논의도 있었으나 신중파의 견해가 우세하여 이렇게 처리되었다. 13개 부문에 걸쳐 292개의 고유어와 한자어의 문법 용어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문법 교육이 정상화되고 특히 대학교 입학 시험에서 문법 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문법 체계와 문법 용어의 통일을 부르짖는 소리가 높아져 1963년에 드디어 학교문법통일안이 공포되었다. 품사 체계는 다음의 9개가 확정되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최현배와 『큰사전』의 10품사에서 지정사가 빠져 9품사가 되었다. 이곳에도 통일안과 『큰사전』에서 정착된 4개의 큰 범주는 아무런 이의(異議) 없이 수용되어 있다. 문법 용어는 음성과 문장부호에 대해서만 고유어 용어가 선택되었고 품사론과 문장론은 한자어가 선택되었다. 특히 지정사 '이다'를 단어로 보지 않기로 한 문법 통일안의 규정과 대부분의 문법 용어가 한자어로 낙착된 것은 문법 파동을 불러일으키는 동인이 되어 한국의 어문학계가 양분되는 불행을 겪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두 차례에 걸쳐 통일 문법에 기댄 교과서가 출판되어 현장에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자마다 의견이 달라 교수상의 애로가 여간 크지 않았다.⁴⁾ 문교부는 한 종류의 문법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일선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80년대 중반에 문법 교과서를 단일 국정 교과서로 편찬하였다. 단일 국정 교과서에서는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되 어미는 단어의 한 부분으로 본다는 제2유형의 틀을 지키면서 조어법에서는 어근과 접사를 세워 굴절법의 단위인 어간과 어미(조사)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한글맞춤법』(1988)에서는 학교 문법의 체계가 제대로 수용되어 있지 않다. 굴절법과 조어법의 용어가 섞여 있다. 이 점 굴절법과 조어법의 용어를 준별한 북한의 규범집과 대조가 된다.(뒤에 나옴) 그리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옛말에 대하여도 통일된 모형을 개발하여 개화기 이후 90여 년 동안 갈등을 겪어 오던 한국의 표준 문법의 틀이 옛말에도 적용되어 통일된 문법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전 계열에 걸쳐 독자적인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쳐지던 문법 교과가 1970년대 말부터는 고등학교에만 한정되었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고등학교 인문계에만 부과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대학수능고사에서 문법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아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만 사 놓고 사장(死藏)시키는 일이 많았다.

4) 남한의 학교 문법의 통일 과정에 대하여는 고영근(1988/1994: 제2부 3장)을 보라.

문법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문법 교육의 퇴보를 가져왔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규범문법도 해방 공간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어떤 원칙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해방 직후는 최현배의 『중등조선말본』(1938)이 교재로 사용되지 않았나 하며, 1947년부터는 박상준의 『조선어문법』이 중등학교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품사 체계는 다음 10품사이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동사, 조사
 최현배의 체계를 물려받기는 하였으나 지정사를 조사로 보았고 대신 접속사를 넣어 10품사가 되었다. 박상준은 해방 전의 자신의 문법서 『조선어법』(1932)에 최현배의 체계를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도 4개의 큰범주가 설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서광순의 인민학교용 『국어문법』(1949)의 품사는 다음 9개이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동사

박상준의 문법에 있었던 조사가 빠진 것만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다. 해방공간의 북한의 문법도 통일안과 『큰사전』에서 정착된 큰범주 4개를 이의(異議) 없이 수용하고 있다.

북한의 규범문법은 1948년에 공포되고 1950년에 책자로 간행된 『조선어신철자법』에서 그 맹아를 볼 수 있다. 우선 문법 체계에 관련되는 용어를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⁵⁾

문장(총론), 단어(총론), 자모(1항), 어음(2장), 된소리(3항), 설측음(4항), 구개음화(5항), 음절(3항), 말음(6항), 반모음/온모음(7항), 문법(3장), 체언의 어간(8항), 용언의 어간(8항), 토(8,9항), 피동형(3절), 사역형(3절), 변격용언(11항), 받침(12항), 용언의 어근(13항), 명사(13

5) 『조선어신철자법』은 고영근(편)(2000)에서 복원한 것을 이용하기로 한다.

항), 부사(13항), 명사의 어근(15항), 어원적 원형(17, 21항), 형용사의 어근(20항), 어원적 어근(23항), 품사합성(29항), 둘 이상의 어근(29항), 어근(29항), 합성어(31항), 절음부(31항), 접두사(33항), 어간(55항), 어근(55항), 체언(61항), 용언(61항), 부사(61항), 조사(61항)

신문자의 도입에 따르는 몇몇 특수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큰 범주 중 체언, 용언, 부사의 세 품사만 보이고 관형사는 폐기시켰다. 이곳의 조사는 이른바 보조사를 뜻한다. 격조사와 어미를 구별하지 않고 “토” 속에 포괄시켰으며, 체언과 용언의 어간을 모두 “어간”의 범주 속에 넣고 조어법의 단위인 “어근”을 더 적극적으로 응용한 것 밖에는 통일안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조선어신철자법』의 문법 체계는 조선어문연구회의 『조선어문법』(1949)를 바닥에 깔고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의 규범문법은 앞에서 언급한 『조선어문법』(1949)에서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문법의 범위를 “어음론/형태론/문장론”의 3부분으로 잡고 남한의 형태소에 해당하는 “형태부”를 세우고 격조사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등 큰 변혁을 보여 주었다.

명사, 수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조사, 감동사

이곳의 “조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격조사를 제외한 보조사를 가리킨다. 이른바 지정사어간 ‘이다’의 ‘이’는 결합모음으로 처리하였고 『조선어신철자법』과 같이 관형사를 세우지 않았다. 지정사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관형사를 큰범주 속에서 제외한 것은 『한글맞춤법통일안』과 『큰사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김수경의 『조선어문법』(1954)에 와서는 큰범주의 하나인 관형사를 살리고 격조사와 보조사를 합쳐서 “토”로 부르되 독립된 품사로 인정하였다. 김수경의 체계는 같은 해 공포된 『조선어철자법』(1954)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곳에서는 신문자의 폐기에 따르는 문법 용어가 삭제되었고 굴절법의 단위인 어간과 토, 조어법의 단위인 어근, 접두사, 접미사가 『조

선어신철자법』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되었다.

북한의 규범문법은 김수경의 문법 등의 과도적 저술을 거쳐 『조선어문법』(1960)에 와서야 완성된 체계를 수립하였다. 남한보다는 빠르지만 그 시기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품사 체계는 다음 8품사이다.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북한은 그 뒤 상징사를 도입하는 일이 없지 않았으나,⁶⁾ 현재까지 이 체계가 기반이 되어 북한의 학교 문법을 통제해 오고 있다. 큰범주 4개를 두는 점은 모두 공통되나 체언형태부인 격조사와 보조사에 단어의 자격을 주지 않았으며, 지정사 ‘이다’를 “명사의 용언적 형태”라 하여 역시 단어의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조선어문법』(1949)에서는 ‘이다’의 ‘이’를 연결모음으로 보았는데 1960년부터는 체언을 용언화하는 기능을 주었으며, 1970년대의 문화어문법 류부터는 “바꿈토”라 하여 토의 일종으로 보았다. ‘이다’를 둘러싸고 몇 차례의 기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전통적인 지정사설을 제기하는 일도 볼 수 있다.⁷⁾ 북한은 초기에는 인민학교 낮은 단계에서부터 문법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현재도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가는 잘 알 수 없으나 남한에 비하여 문법 교과에 우선권을 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재외교민이라 함은 주로 옛 소련과 중국 지역에 사는 한민족을 가리킨다. 옛 소련은 1920년대 중반부터 한국 민족어 교육이 실시되어 1930년에는 규범집이 성안된 바 있으며, 해방 후는 북한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적 문법 교과서를 편찬하여 왔다. 중국 지역은 주로 반도에서 나온 문법서나 철자법 종류를 기반으로 삼아 민족어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해방 후는 북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다.⁸⁾

옛 소련 지역은 1930년에 어문 규범집을 겸한 교원 참고용 『고려문전』을

6) 북한의 문법 체계의 변천에 대하여는 고영근(2001: 제2장)을 보라.

7) 이 문제에 대하여는 임흥빈(1997: 355)을 보라.

8) 소련 지역과 중국 지역의 규범문법의 실상에 대하여는 고영근(2001: 3, 4장)을 보라.

간행하였는데 품사는 다음 8개이다.

명사, 형용사, 동사, 조사, 종지사, 접속사, 부사, 감탄사

관형사가 빠진 것만 제외하고는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과 같다.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처리하는 제1유형을 선택하였으며, 큰범주 중 관형사가 빠진 것이 특징이다. 사실 관형사는 그 수가 얼마되지 않는 데다가 견해에 따라서는 접두사나 명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넣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곡절을 겪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수요가 작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의 변별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 독립된 품사의 자격을 주어야 하고 더욱이 용언의 관형사형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관형사는 필연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처음에는 관형사를 버렸다가 나중에 되살린 것이 관형사의 문법적 기능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고려문전』 이후 강제정, 계(계)봉우, 오창환이 중등학교 문법서를 저술하였으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면서부터는 민족어 교육이 중단되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계봉우는 프린트판으로 문법서를 내면서 민족어 문법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였으며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민족어 교육이 부활됨에 따라 많은 문법 교과서가 출간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김병하와 황윤준의 『조선어문법』(상편, 정정재판, 1957)의 품사 체계는 다음 10개이다.

명사, 수사, 대용사, 형용사, 동사, 부사, 관형사, 후치사, 조사, 감동사

4개의 주요 범주를 세우고 있는 점은 남북한과 차이가 없다. ‘대용사’는 대명사이고 ‘후치사’는 람스테트 등의 외국인 문법가의 견해에 가까우며, ‘조사’는 『조선어문법』(1949)와 같이 보조사를 가리킨다. 체계나 용어에 있어 북한문법을 선별하여 수용하였다.

중국 지역의 규범문법은 『조선어문법』(1983)에 의하여 대표된다. 품사체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문법 체계가 북한의 『조선어문법』(1960)과 큰 차이

가 없으므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 중국 지역의 『조선말규범집』(1985)의 문법 체계 역시 『조선어문법』(1983)을 따르고 있다.

3. 한민족어의 규범문법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지금까지 필자는 해방 전부터 분단 후의 남북한, 그리고 재외교민의 규범문법의 발자취를 대강 훑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규범문법 통일안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규범문법의 통일안에 포함되는 주제에는 문법 단위, 품사 체계, 성분 체계와 문장의 종별, 문법 용어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 문법 단위와 품사 체계만 주로 논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⁹⁾

한국의 전통 문법에서는 형태부를 둘러싸고 세 가지 상반된 처리를 하여 왔다. 이곳의 형태부란 의미부에 상대되는 개념인데 전통적으로 “관계부, 토, 토씨”로 불러 왔다. 이를테면 ‘꽃이 피었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세울 수 있다.¹⁰⁾

제1유형: 꽃/이/피/었다

제2유형: 꽃/이/피었다

제3유형: 꽃이/피었다

요컨대 문제는 체언에 붙는 조사이건 용언의 어간에 붙는 어미이건 모두 “토/토씨”라는 범주에 넣되 단어로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어느 하나만 단어로 인정하고 다른 것은 단어의 일부분으로 볼 것이냐로 귀착된다. “토”를 단어로 인정하는 유형을 제1유형, “토”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9) 필자는 고영근(1994: 460-72, 1995a)에서 남북한 규범문법의 이질화 양상을 문법 단위, 품사 체계, 성분 체계와 문장의 종류, 문법 용어에 이르기까지 확인·검토한 바 있다.

10) 국어 문법의 유형에 대하여는 일찍이 이극로(1935)에서 그 틀이 마련되었고 김민수(1954/1960)에서 제1, 2, 3유형으로 형식화하였다.

유형을 제3유형, 조사만 단어로 인정하고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유형을 제2유형이라고 부른다. 이를 분석적 체계, 종합적 체계, 절충적 체계라 부르기도 한다.¹¹⁾

이곳의 “토”는 직접적으로는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1909), 주시경의 『말의 소리』(1914),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 홍기문의 『조선문전요령』(1927)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멀리는 전통 시대의 언해 문헌에 보이는 “吐”에 연결된다.¹²⁾ 남한의 학교문법은 제2유형을 지향하고 있으나 북한은 제3유형을 지향하여 조사와 어미를 모두 “토” 속에 넣어 단어로 처리하지 않는다. 주시경 등의 토의 개념을 물려받되 이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남한에서도 역사 문법에 기울어진 사람들은 일찍부터 제3유형을 선호해 왔고 1950년대에만 하여도 젊은 학자들은 학교문법에서 조사를 “토”로 부른 적이 있다.¹³⁾ 필자는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제3유형을 지향하되 “토”라는 범주 속에 넣기를 제안한다. 이는 전통적으로는 한국의 전통문법가들의 견해를 이어받고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처리를 참조한 것이다.

토에는 크게 명사토와 용언토를 둘 수 있고, 명사토에는 격토, 접속토, 보조토를 둘 수 있다. 명사토의 하위 분류는 현행 학교문법의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에 해당한다. 용언토에는 크게 완성토와 선행토가 있다. 완성토에는 종결토와 비종결토로 나뉘는데, 종결토는 현행 학교문법의 종결어미에, 비종결토는 비종결어미에 해당한다. 선행토는 높임, 낮춤, 시제 등의 선어말어미를 가리킨다.¹⁴⁾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지정사의 처리다. 북한은 초기에는 이

11) 관련 논의는 김윤경(1957)을 보라.

12) 이승욱(1991)에서는 “吐”의 내력을 더듬은 바 있으며, 특히 그의 소론에는 주시경 『말』(1909?: 80장 앞쪽)의 “前에는 此三體를 다 吐라 하였느니라”를 인용한 바 있다. 이곳의 “三體”는 “引接, 間接, 助成”을 가리키는데 현대문법의 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에 해당한다. 관련 내용은 김민수(1977/1986: 268)을 보라.

13) 김민수의(1960)이 그러하다.

14) 토의 하위 분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영근(1993: 104, 107)을 보라.

른바 지정사 '이다'의 '이'를 결합모음으로 처리하여 형태소의 자격을 주지 않았는데(앞에서 나옴.) 1960년부터는 "명사의 용언적 형태/바꿈토"라 하여 형태소의 자격을 주었다. 사실 이른바 지정사 '이다'는 남쪽에서도 지난 1950년대 중반으로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 처리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 바 있으며 지금도 그 문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¹⁵⁾

'이다'는 체언과 함께 한 어절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조사의 속성도 있고 '이'를 어간으로 삼아 어미가 붙는다는 점에서는 용언의 속성도 있다. 어느 설 명법을 취하는 것이 문법 기술에 경제적인가를 따져야 한다. 최현배가 일찍부터 조사설을 취하지 않고 용언설을 택하게 된 것은 그런 이해 득실을 따졌기 때문이다. 남쪽의 학교문법에서 조사설을 택하게 된 것은 단어로 보지 않기로 한 문법 통일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선 발등의 불을 끌 수 있다는 점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¹⁶⁾ 조사설을 취하면 '이다'와 짝을 이루면서 활용 형식이 같은 부정어인 '아니다'와의 관계가 문제로 대두된다. '아니다'를 '아니이다'로 푸는 일도 없지 않다.¹⁷⁾ 이러한 발상은 역사적으로는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마는,¹⁸⁾ 현대의 토박이의 직관에 과연 '아니다'가 '아니'와 '이다'로 인식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북한에서 '이다'를 "바꿈토"라고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다'의 '이'는 활용어의 어간이며, '-(으)ㅁ, -기'는 품사의 자격을 바꾸는 전성어미다. '이다'는 통사론적으로는 자립 형식인 '아니다'와 짝을 이루고 있고 이들은 또 형태론적으로 공통된 활용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계사"라 불러 "형식사" 속

15) 이를테면 어학 전문 학술지 『형태론』의 지상 토론에는 '이다'의 문법적 위상을 둘러싸고 벌써 3회째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2권 1호(2000, 봄), 2권 2호(2000, 가을), 3권 1호(2001, 봄)를 보라.

16) 한국의 전통 문법이 가운데서 '이다'를 조사로 처리한 문법가는 정인승(1949/1956)이다.

17) 이 문제는 정렬모(1935)에서 제안된 바 있고 고영근(2001: 115)에서 이를 평가한 바 있다.

18) 중세어의 '아니'를 명사로 본 견해는 안병희(1959/1992: 11-19)에서 접할 수 있다.

에 넣기를 제안한다. 자립형식인 ‘아니다’를 어떻게 의존형식인 ‘이다’와 같은 동아리에 넣을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정”의 개념은 어휘적이기보다 문법적이라는 사실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형식사에는 의존명사, 보조용언, 계사가 들어가는데 이들은 어휘적이기보다 문법적인 특성이 강하며 자립적이기보다는 의존성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작은범주 속에 넣을 수 있다.

현재 품사 체계가 남쪽은 9품사, 북쪽은 8품사로 되어 있다. 차이는 조사를 단어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귀착된다. 나머지는 순서와 용어의 차이뿐이다. 필자가 구상하는 품사 체계의 통일안은 다음 9품사이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간투사, 형식사

이 품사 통일안에는 『한글마춤법통일안』 이후 남북과 재외교민 사이에서 공인하여 왔던 4개의 큰 품사 범주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가 기반이 되어 있다. 체언과 용언을 세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큰 의의(意義)가 없으나 실천상으로는 유용한 바가 많다. 통일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간투사”는 최근의 남한의 이 방면 연구를 수용하여 감탄사 대신 선택한 것이다.¹⁹⁾ 어미와 조사는 모두 “토”의 범주 속에 넣어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태소란 흔히 최소의 유의적 단위로 정의된다. 현재 남쪽에서도 어떤 어형 이를테면 ‘먹는다/간다, 먹는구나, 먹습니다, 먹느냐, 먹는: 먹더라, 먹더구나, 먹습디다, 먹더냐, 먹던’을 두고 사람에 따라 분석하는 일도 있고 분석하지 않는 일도 있다.²⁰⁾ 북한은 위의 어형에 나타나는 ‘느’ 계열과 ‘더’ 계열을 “뜻조각”이라고 하여 분석을 보류하고 있다. 두 계열의 어미는 조선어학회의 『큰사전』에는 종합적으로 실려 있고 북한의 사전도 마찬가지다. 남쪽은 분석에 두 의견이 엇갈려 있고 북쪽에서는 사전과 문법에서 모두 어미의 일부분

19) 종전의 감탄사를 ‘간투사’로 불러야 한다는 견해는 신지연(1988, 1989)를 보라.

20)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무라타(2000)에서 볼 수 있다.

으로 보고 있다.

사실 두 계열의 어미는 형태소 분석 원리에 기대면 유의적 단위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반적 선어말어미와는 달리 문장의 형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철수가 책을 읽었다’의 ‘-었-’은 ‘철수가 책을 읽-’이라는 명제를 과거 시제로 바꾸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장 형성소”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철수가 책을 읽더라’의 ‘-더-’는 ‘철수가 책을 읽-’이라는 명제에 붙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종결어미 ‘-다’와 결합되어 ‘-더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전체 명제에 붙는다. 종결어미와는 직접적이고 명제와는 간접적이다. 이런 점에 유의하여 필자는 분포가 제약되는 일련의 어미를 ‘문장 구성소’라 부른 일이 있다. 형성소와 구성소의 개념을 도입하면 그 사이 남북에서 의견의 합치점을 보지 못하던 어미류가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믿는다.²¹⁾

문장 성분도 남북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많다. 필자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의 6성분이 중용을 얻은 구분이 아닌가 한다. 문장종류는 평술문, 의문문, 명령문, 제안문, 감탄문의 5개를 두는 것이 실용적으로 무난해 보인다. 구성상의 문장 분류는 워낙 문법 모형이 달라서 비교하기가 어렵다.²²⁾

문법 용어는 적어도 품사론, 형태론, 문장론 용어는 남북이 다 같이 한자어 용어를 택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한자어를 택하여도 세부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적지 않다. 북한에서는 문화어 운동 시기에 문장론 용어를 고유어로 바꾼 일이 있으나 1980년 후반부터는 다시 한자어로 돌아가고 있어 이질화의 폭이 좁혀지고 있다. 어음론 용어는 남북이 원칙적으로 고유어 용어를 선택하고 있으나 발음기관에 관련된 용어 밖에는 고유어를 고집하기가 쉽지 않다. 남쪽에도 음성/음운에 관련되는 용어를 고유어 일변도로 밀고 나가는 일이 없지 않으나 일반의 거부감이 보통이 아니다. 문장 부호는 현재의 남

21) 구성소와 형성소는 조어법에도 적용된다. 자세한 논의는 고영근(1993: 28-242)를 보라.

22) 남북의 문장론 체계와 통일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영근(1993: 132-35)를 보라.

북에서 고유어 용어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구체적 개념을 지시하는 용어는 현실적인 어휘에서 가져와도 문제가 없으나 추상적인 개념일수록 한자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어느 한 계통의 문법 용어만을 고집하기가 어렵다. 한자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고유어 용어를 도입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²³⁾

4. 마무리

이상과 같이 필자는 『한글맞춤법통일안』(1933) 이후 한국의 규범문법이 걸어온 발자취를 일제 강점기, 분단 이후의 남북한, 재외교민으로 나누어 그 사정을 훑어 본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주로 문법 단위와 품사 체계를 중심으로 통일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문법 단위로는 형태부를 “토”의 범주 가운데 포괄시키되 단어로 인정하지 않으며 품사는 형식사를 새로 세워 9품사로 정할 것을 제안하여 보았다.

사실 남북의 어문 통일 사업에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통일 규범문법을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완성되어 있어야만 공통된 어문 규범집도 만들 수 있고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도 만들 수 있으며 언어 통일의 마지막 결실인 『민족어대사전』(임시 이름)도 편찬할 수 있다. 지난 1930년대에는 문법 연구의 역사가 짧아 표준 문법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남북이 높은 수준의 문법적 업적을 쌓아 왔기 때문에 중지를 모으면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표준 문법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종류의 문법은 한반도의 언어 문자 생활은 물론, 재외교민, 나아가서는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 틀림없다.

23) 필자는 문법 통일안을 마련하는 마당에서 “평술토(베품토), 명령토(시킴토)”와 같이 고유어 용어를 병기한 일이 있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 고영근(1994). 『통일시대의 語文問題』. 도서출판 길벗.
- 고영근(1995a). 『남북 규범문법의 이질화 문제』. 국제고려학회 학술총서 3.
- 고영근(1995b).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집문당.
- 고영근(1996). 『우리 언어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한신문화사.
- 고영근(2001). 『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대표편집)(2000-2001). 어학전문학술지 『형태론』. 도서출판 박이정.
- 고영근(편)(2000). 『북한 및 재외교민의 철자법 집성』. 도서출판. 亦樂.
- 김민수(1960). 『국어문법론연구』. 통문관.
- 김민수(1977/1986). 『주시경연구(증보판)』. 탑출판사.
- 김민수의(1960). 『새고교문법』. 동아출판사.
- 김윤경(1957). 『고등나라말본』. 동아출판사.
- 무라타(村田 寬)(2000). 「현대한국어의 ‘-느-’와 ‘-더-’에는 형태소의 자격이 있을까」. 『국어학논집4』. 亦樂.
- 신지연(1988). 「국어 간투사의 위상 연구」. 『국어연구』 83.
- 신지연(1989). 「간투사의 화용론적 특성」. 『주시경학보』 3.
- 안병희(1959/1992). 『국어사연구』. 문학과 지성사.
- 이극로(1935). 「임자씨와 토」. 『한글』 3-1.
- 이승욱(1991). 「吐文法の 沿革」. 『國語學研究百年史(1)』. 일조각.
- 임홍빈(1997). 『북한의 문법연구』. 한국문화사.
- 정렬모(1935). 「아니」의 格位는 무엇?. 『한글』 3-5.
- 정인승(1956). 『표준고등말본』. 신구문화사.
- 차광일(1991). 「朝鮮語吐의 特性」. 『國語學研究百年史(1)』. 일조각.